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471호 2019. 10. 1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33호 (가칭)마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3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2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8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신도시 AA4블록 유승한내들 신축
2. 사업주체 : (주)유승종합건설 (대표 민광옥)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
 - 나. 대지면적 : 57,12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53,836.2080㎡ (지하3층, 지상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93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346,520,492천원
4. 사업기간 : 2018. 10. 19. ~ 2021. 09. 18.
5. 변경사항
 - 가. 외단열 단열재 변경(난연재→준불연재)

- 나. 주민운동시설 변경(실외기실,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등)
- 다. 관리사무소 변경(실배치 조정)
- 라. 미화원 휴게실 변경(남여 구분 설치)
- 마. 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위치 변경(침실2→다용도실)
- 바. 연면적 변경($153,735.5502\text{m}^2 \rightarrow 153,836.2080\text{m}^2$)
- 사. 구조 및 도면 오기사항 정정(변경)
- 아. 공용계단 자동개폐창 추가 설치
- 자. 지하주차장 및 단지 높이 변경(정정)
- 차. 우수 및 오수 계획 변경
- 카. 포장단면 상세 등 상세도 추가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8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덕평산업개발(주) (대표자 양민석)
전라남도 담양군 청평면 보평길 49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
 - 나. 대지면적 : 21.818㎡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72,765.3801㎡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510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
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189,833,080천원
4. 사업기간 : 2019. 12. 01. ~ 2022. 12. 31.

5. 변경사항

가. 착공예정일 변경

- 기존 : 2019년 10월 01일
- 변경 : 2019년 12월 01일

나.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

- 기존 : 2022년 05월 30일
- 변경 : 2022년 12월 31일

다. 사업비 변경

- 기존 : 377,360,457천원
- 변경 : 189,833,080천원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23-2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10.1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경서동 경서2구역 도시개발구역 1블록 1로트 외 2필지
경서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경서지역주택조합 (조합장 : 황선범)
남광토건(주) (대표자 : 김종오)
금광기업(주) (대표자 : 이동학)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2도시개발구역 1블록 1로트
외 2필지
 - 나. 대지면적 : 16,699.8333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50,378.2158m² (지하 2층, 지상 20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4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151,159,721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1. ~ 2022. 1. 1.

5. 변경사항

가. 지적경계 변경으로 인한 대지면적 변경

- 기존 대지면적 : 16,701m²
- 변경 대연면적 : 16,699.8333m²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대우건설 (대표자 : 김형)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 나. 대지면적 : 85,540㎡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84,148.95㎡ (지하 2층, 지상 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1,5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675,048,794천원
4. 사업기간 : 2019. 1. 20. ~ 2021. 8. 31.
5. 변경사항
 - 가) 112동 기초 변경
 - 기존 : 파일기초
 - 변경 : 지내력기초
 - 나) 지하주차장 기초 변경

- 기존 : 지내력기초
- 변경 : 지내력 및 파일 복합기초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5블록의 주택건설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5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한신공영(주) (대표자 태기전)
서울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빌딩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5블록
 - 나. 대지면적 : 44,971㎡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36,655.7081㎡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910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394,468,000천원
4. 사업기간 : 2019. 11. 30. ~ 2021. 10.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633

(가칭)마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의 (가칭)마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요
 - 가. 구역명칭 : (가칭)마전 도시개발구역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
 - 다. 면 적 : 204,727m²
 - 라.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시행(제안)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시행(제안)자: (가칭)마전구역 도시개발조합(대표자: 박시형)
 - 나. 시 행 방 식 : 환지방식(평가식)

3. 입안할 개발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204,727	100.0	-
주거용지	103,216	50.4	-
단독주택용지	12,956	6.3	-
공동주택(APT)	80,020	39.1	-
공동주택(연립)	4,987	2.4	-
준주거시설용지	5,253	2.6	-
상업용지	5,504	2.7	-
도시기반시설용지	79,149	38.7	-
공 원	20,173	9.9	-
경관녹지	4,705	2.3	-
연결녹지	-	-	-
공공청사	2,888	1.4	-
유치원	1,153	0.6	-
하 천	5,049	2.5	일부 도로 및 보행자도로 중복
도 로	37,983	18.5	일부 하천 중복
보행자도로	1,183	0.6	일부 하천 중복
주차장	2,559	1.2	-
공공공지	1,758	0.9	-
유수지	1,698	0.8	-
기타(자족)시설용지	16,858	8.2	-

나.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4.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032-560-5773)

검단동행정복지센터 (☎ 032-560-3253)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63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기록물의 정리시기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 시기 및 심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올바른 띄어쓰기를 사용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273, 팩스 032-560-285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물의 정리시기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 시기(안 제8조) 및 심의회 설치 근거 조항 변경(안 제12조)
- 나. 제1조(목적)에 약칭 사용 삭제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올바른 띄어쓰기 사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를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인천광역시서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록관”을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영 제17조 내지 19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3월 31일”을 “5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월 31일”

을 “8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1조 중 “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의2”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1주전”을 “1주 전”으로, “송부하여 사전에”를 “보내 미리”로 한다.

제17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8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3조 중 “2주전”을 “2주 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구축하여야”를 “갖춰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사용되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초래하는”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39조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전대할”을 “다시 빌려줄”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타부처”를 “다른 부처”로,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한다.

제4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 -----.</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 ----- ----- 규칙에서----- -----.</p>
<p>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총괄부서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③ (생략)</p>	<p>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 24.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p>	<p>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 ----- 각 호----- -----. 1. ~ 24.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p>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생략)

② 기록관장은 영 제17조 내지 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생략)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 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 (생략)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구 및 산하기관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 3

-----.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해서-----

-----.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5월 31일-----
-----.

③ -----
----- 8월

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 연기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에 의거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심의회 설치) 심의회는 법 제27조, 영 제4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등) ① ~ ④ (생략)

⑤ 간사는 심의회가 열리기 1주전에 위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우편등으로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하여야

31일-----
-----.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

----- 미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록물의 평가) -----
-----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12조(심의회 설치) ----- 법 제27
조의2-----
-----.

제16조(회의 및 의결 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 1주 전-----

----- 보내 미리 -----

한다.

⑥ (생략)

제17조(경비지급) 민간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엄수의무)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예비심사)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결정을 하기위한 심의사항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폐기심의 기준) 폐기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제23조(주민의견 수렴) 기록관장은 기록물 폐기의 투명성을 위해 심의회에 상정하기 2주전에 구 홈페이지에 폐기 목록을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비지급) ----- 대해서-----

-----.

제18조(비밀엄수의무) -----

-- 아니 된다.

제21조(예비심사) ① -----

----- 대해서-----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폐기심의 기준) -----
----- 대해서-----
-----.

- 1. ~ 8. (현행과 같음)

제23조(주민의견 수렴) -----

----- 2주 전-----

-----.

제26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5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36조(열람 준수사항) ① (생략)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생략)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

제26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

----- 갖춰야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

제36조(열람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
되는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

-----.

1. (현행과 같음)
2. -----
-----.

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생략)

제38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6. (생략)

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40조(대출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 한 차례만 -----
-----.

3. (현행과 같음)

제38조(열람·대출의 제한) -----
--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른 사람-----

5.·6. (현행과 같음)

7. -----
- 주는 -----

8. -----
적합하지 않다고 -----

제39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
----- 다른 사람
----- 다시 빌려줄 -----
-----.

제40조(대출기록물의 반납) ① -----

-----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 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시

2. (생략)

제4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

-----.

- 1. ----- 다른 부처 -----
----- 넘는 -----

2. (현행과 같음)

제42조(운영세칙) -----
필요-----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6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 ~ 제4조)
-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범위(안 제6조)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업무의 위탁, 행·재정 지원, 실적보고, 검사·감독,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에게 2019. 11.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8층 인천광역시 서구청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전화번호 : 032-560-0862 (FAX 560-2731)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4조)

나.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범위(안 제6조)

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업무의 위탁, 행·재정 지원, 실적보고, 검사·감독,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공문 별도 시행(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준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

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여성, 고령자, 준고령자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5. 공동통근버스 운행 등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6.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7.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또는 기업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제8조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검사·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